전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) 교통법규를 꼭 !! 준수합시다

● 원동기장치자전거란?

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 11KW 미만)의 이륜자동차 또는 그밖에 배기량 125CC 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11KW 미만)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 (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)

● 원동기장치자전거 주요 **단속 항목** (도로교통법)

무면허, 음주 운전 시 형사입건 (사업자는 무면허, 음주 운전 방조죄 처벌)

역주행, 중앙선 침범 4만원 범칙금 벌점 30점

인도 침범 **4만원 범칙금** 벌점 10점

안전모 미착용 2만원 범칙금

제한속도(20km) 위반 2만원 범칙금 ※ 한옥마을은 20km 이하 제한구역입니다.

● **전동차**(원동기장치자전거) 종류



이륜 전동차



삼륜 전동차



사륜 전동차(4인용)



사륜 전동차(6인용)

교통법규 준수 안전수칙

- **만16세 이상,**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**면허 소지자**에 한하여 **운행**할 수 있습니다.
- **인도**와 **중앙선**을 **침범**해서는 **안됩니다**.
- **역주행**을 하면 **안됩니다.**
- **안전장구**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.
- 제한속도(20km) 준수해야 합니다.



